

군산시 공고 제 2020-2407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이관에 따른 감면 조례 조문 삭제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3조)
- 나. 서민생활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
-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획예산과 협의
- 다. 합 의 :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기획예산과(규제심사)와 협의
-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에 해당
- 마. 입법예고 : 2020. 12. 1. ~ 12.21.(20일간)
- 바. 기타사항 : 사전절차 이행 관련
 - 지방세심의위원회(11월 3일) 심의 의결 : 원안가결
 - 안 제5조, 제7조, 제9조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연장 관련 심의(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관련)

4.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세무과(전화:454-2403, FAX:463-452-8162)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전화 063-454-24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산시 고시 제2020-161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507-1번지 일원 관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관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수면 관원리 507-1번지 일원	22,000	증)2,076	24,07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	-	서수면 관원리 507-1번지 일원	○면적변경 - 22,000㎡ → 24,076㎡ (증 2,076㎡)	○ 서수면 관원리 507-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운영중인 (주)동우팜투테이블의 공장증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22	관원	산업	서수면 관원리 507-1번지 일원	22,000	
변경	22	관원	산업	서수면 관원리 507-1번지 일원	24,076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관원	○면적변경 - 22,000㎡ → 24,076㎡ (증 2,076㎡)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항 반영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BL	22,000	증) 2,076	24,076	①	서수면 관원리 507-1번지 일원	20,571	증) 2,076	22,647	공장 및 부대시설
					②	서수면 관원리 522-5번지 일원	1,429	-	1,429	기반시설 (도로)

II. 군산 도시관리계획(관원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계재 생략”

※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공고 제2020-2349호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고

군산시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1단계)이 완료되어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군 산 시 장

1. 사용개시 일자 : 2020년 11월 30일
2. 사용개시 공공하수도 내역
 - 가. 공공하수도 위치 : 군산시 옥서면 일원
 - 나. 공공하수도 배제방식 : 분류식
 - 다. 하수처리구역 : 옥서처리구역(옥서처리분구)
 - 라. 사용개시 시설(신설 하수관로)
 - 1) 오수관로 : D150~200mm, L=9,877m
 - 2) 압송관로 : D80mm, L=3,197m
 - 3) 맨홀펌프장 16개소
3. 관계도면을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하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 「하수도법」 제65조 및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2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하수관로 관련 ☎063-454-5473, 하수도 사용료 ☎063-454-5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0-2412호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연 번	안 건 명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11월 2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20-2443호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연 번	안 건 명
1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 11월 27일

군 산 시 장